

거주사실 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수분양자 (거주의무자)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연락처	(자택)
			(휴대전화)
주택의 표시	(아파트) (동) (호)		
	주택 소재지(주소)		
	전용면적 (㎡)	사용 검사일 년 월 일	
	계약체결일 년 월 일	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	
	전매제한기간: 거주의무기간:	소유권 이전일 년 월 일	
거주기간	총 거주기간: 년 월 (유예기간: 년 월 일)	-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: 년 월 일	
		- 거주의무기간 개시일: 년 월 일	
		- 1회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		- 2회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거주의무 이행 완료일		년 월 일	

「주택법」 제57조의2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주택법」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처리절차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	→ 검토 처리기관: 지방자치단체의 장
→ 기안·결재		→ 통보